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재대행을 위한 보고

1. 보고내용

- 가.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은 하수처리공정의 일부시설물 (제1·2건조, 분뇨, 탈수시설)을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행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 다. 관리대행기간('24.1.~ '26.12.) 만료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일부시설물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게 재대행하고자 함.
- 라. 참고로 현재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안은 제295회 정례회(의안번호 1602호, 2020.6.30.)에서 동의(원안 가결)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5. 9. 29.) 제7조 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나. 사업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용답동)
- 대행시설 : 제1건조시설(300톤/일), 제2건조시설(350톤/일),
분뇨처리시설 (4,000kl/일), 탈수시설(585m³/hr)
- 대행기간 : 3년(2027년 1월 ~ 2029년 12월)
- 대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소요예산 : 42,182백만원

구분	예산(천원)	예산과목	예산 세부 내역(천원)
2027년	13,654,905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7,324,051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330,854
2028년	14,056,567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7,535,787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520,780
2029년	14,470,050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7,753,647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6,716,403

※ 비정산비 : 관리대행시설 소요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용역 결과
정 산 비 : 물가상승률(3%) 반영

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

- 제1 · 2건조, 분뇨, 탈수시설 운영
- 기계 · 전기설비 등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관리대행시설의 공정효율화 도모
-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라.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

- 중랑물재생센터는 제1·2건조시설, 분뇨처리시설, 탈수시설 등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부족 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하고 있음.

- 관리대행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 76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대규모 인력 확충이 곤란한 실정으로
- 일부시설물 운영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재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대행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관리대행시설 위치도



붙임 2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성과평가

□ 관리대행 개요

대 행 명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대행기간	2024.1.1. ~ 2026.12.31.(3년)
대행시설	제1건조시설(300톤/일), 제2건조시설(350톤/일) 분뇨처리시설(4,000kl/일), 탈수시설(585m ³ /hr)
대행비용	6,852백만원(2026년 비정산비)
운영인력	76명
대행업체	이엔워터(주), 한중산업개발(주)

□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성과평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10.1.)

○ 평가 결과

구 분	평가 결과 (점수)	관리대행업체	평가기관	비고
2024년	87점	이엔워터(주) 등 2개사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5년	평가중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6년 1~6월	평가예정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재대행을 위한 보고

1. 보고내용

- 가. 중량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관리대행은 하수처리공정 중 제1처리장을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행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 다. 관리대행기간('24.1. ~ '26.12.) 만료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제1처리장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게 재대행하고자 함.
- 라. 참고로 현재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안은 제277회 정례회(2017. 11.27.)에서 동의(원안 가결)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5. 9. 29.)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나. 사업 개요

- 시 설 명 : 중량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용답동)
- 시 설 규 모 : 25만 m^3 /일
- 관리대행기간 : 3년(2027년 1월~2029년 12월)
- 관리대행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소요예산 : 17,710백만원

구분	예산(천원)	예산과목	예산 세부 내역(천원)
2027년	5,733,066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2,238,894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3,494,172
2028년	5,901,704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2,302,707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3,598,997
2029년	6,075,308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2,368,341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3,706,967

※ 비정산비 : 소요인력 및 관리대행비용 산정용역 결과
정 산 비 : 물가상승률(3%) 반영

나. 주요 관리대행 내용

- 제1처리장 수처리분야 운영
- 수질분석 및 법정 방류수질 준수에 관한 사항
- 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조건별 운영인자 및 자료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 견학을 위한 방문자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

- 중량물재생센터 제1처리장의 처리공법은 기존 처리장의 일반 공법(A₂O, MLE, 표준활성슬러지법)과 달리 생물막여과공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하수처리공법이며,
-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인력 23명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 제1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 전문업체에 재대행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관리대행시설 위치도



사진설명 중량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사진설명 중량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항공 전경 사진

□ 관리대행 개요

대 행 명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관리대행
대행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대행시설	제1 처리장(25만 m^3 /일)
대행비용	1,991백만원(2026년 비정산비)
운영인력	23명
대행업체	GS건설(주), 에코이에스, (주)한중산업개발, 이엔워터(주), 삼정테크이앤씨(주)

□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성과평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10.1.)

○ 평가 결과

구 분	평가 결과 (점수)	관리대행업체	평가기관	비고
2024년	88점	GS건설(주) 등 5개사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5년	평가중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6년 1~6월	평가예정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재대행을 위한 보고

1. 보고내용

- 가. 중량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은 총인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방류수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는 사업으로,
-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 다. 관리대행기간('24.6.~'26.12.) 만료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총인처리시설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재대행하고자 함.
- 라. 참고로 현재 관리대행 시의회 동의안은 제295회 정례회(의안번호 1603호, 2020.6.30.)에서 동의(원안 가결)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5. 9. 29.)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나. 사업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용답동)
- 대행시설 : 총인처리시설(412,000 m^3 /일)
- 대행기간 : 3년(2027년 1월 ~ 2029년 12월)
- 대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소요예산 : 17,374백만원

구분	예산(천원)	예산과목	예산 세부 내역(천원)
2027년	5,624,176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1,349,399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4,274,777
2028년	5,789,807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1,386,787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4,403,020
2029년	5,960,323	수선유지 교체비	비정산비(인건비 등) 1,425,212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4,535,111

※ 비정산비 : 관리대행시설 소요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용역 결과
정 산 비 : 물가상승률(3%) 반영

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

- 총인처리시설 운영
- 기계 · 전기설비 등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관리대행시설 공정효율화 도모
-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라. 관리대행 추진 필요성

- 중랑물재생센터는 방류수질 강화에 따라 제3처리장 후단에 총인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부터 전문 민간업체에 관리대행 하고 있음.

- 관리대행시설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 14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인력 확충이 곤란한 실정으로,
-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민간 전문업체에 재대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재생센터 운영과 방류수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관리대행시설 위치도



□ 관리대행 개요

대 행 명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관리대행
대행기간	2024.6.1. ~ 2026.12.31.
대행시설	총인처리시설(412,000 m^3 /일)
대행비용	1,229백만원(2026년 비정산비)
운영인력	14명
대행업체	이엔워터(주), 한중산업개발(주)

□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성과평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10.1.)

○ 평가 결과

구 분	평가 결과 (점수)	관리대행업체	평가기관	비고
2024.6. ~ 2024.12.	90점	이엔워터(주) 등 2개사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5년	평가중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6년 1~6월	평가예정		서울시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재대행을 위한 보고

1. 보고내용

- 가.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은 하수처리 시설 중 일부 시설물(슬러지 탈수·건조·소각, 분뇨, 총인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 전문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대행토록 하는 사업으로,
- 나. 현재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은 민간 전문업체가 관리대행 중이며,
- 다. 관리대행기간(4개 시설물 '24.1.1.~'26.12.31. 총인처리시설 '24.5.8.~'26.12.31.) 만료일 도래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대행(3년, '27.1.1.~ '29.12.31.)을 재차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재생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행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리·운영의 관리대행)
- 「난지·중랑물재생센터 조직 효율화 계획」 [시장방침 제502호 ('08.9.12.)]

나. 사업 개요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대덕로 426(현천동)
- 관리대행 시설 : 탈수(360 m^3 /hr), 소각(150톤/일), 건조(150톤/일), 분뇨(4,500 kl /일), 총인(439,200 m^3 /일)
- 관리대행 기간 : 3년('27.1.1.~'29.12.31.)
- 대행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
- 운영원가 : 54,138백만원(3년)

구분	예산(천원)	예산과목	예산 세부 내역(천원)
2027년	17,538,131	수선유지	비정산비(인건비 등) 6,797,291
		교체비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10,740,840
2028년	18,041,333	수선유지	비정산비(인건비 등) 6,978,268
		교체비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11,063,065
2029년	18,559,030	수선유지	비정산비(인건비 등) 7,164,073
		교체비	정산비(수선유지비, 약품비 등) 11,394,957

※ 비정산비 : 관리대행시설 소요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용역 결과

정 산 비 : 물가상승률(3%) 반영

다. 주요 관리대행 내용

- 탈수, 분뇨, 소각, 건조, 총인 관리대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대행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 보고에 관한 사항

라. 관리대행 필요성

- 난지물재생센터는 '03년부터 하수처리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부족인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 기술을 확보한 민간 전문 관리대행업체에게 관리대행 토록하고 있음

- '26.12.31. 관리대행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해당시설을 직영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 69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대규모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 대상시설의 관리대행을 재차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재생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리대행 추진현황

차수	계약기간	관리대행 기관	비고
1차	2003.1. ~ 2005.12.	한솔이엠이	의무운전
2차	2006.1. ~ 2008.12.	한솔이엠이	재관리대행(공개모집)
3차	2009.1. ~ 2011.12.	(주)티에스케이워터	재관리대행(공개모집)
4차	2012.1. ~ 2014.12.	(주)삼천리엔바이오	재관리대행(공개모집)
5차	2015.1. ~ 2018.1.	대양엔바이오(주)	재관리대행(공개모집)
6차	2018.2. ~ 2020.12.	대양엔바이오(주)	재관리대행(공개모집)
7차	2021.1. ~ 2023.12.	대양엔바이오(주)	재관리대행(공개모집)
8차	2024.1. ~ 2026.12.	이엔워터(주)	재관리대행(공개모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공개경쟁입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기준

붙임 1

관리대행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설명

난지물재생센터내 관리대행시설 위치도



1. 탈수시설



2. 건조시설



3. 소각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종인처리시설

□ 관리대행 개요

- 대행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대행시설
 - 분뇨(4,500kl/일), 탈수(360m³/hr),
 - 소각(150톤/일), 건조(150톤/일)
 - 총인(439,200m³/일)
- 대행비용(비정산비) : 6,324백만원/년('26년)
- 운영인력 : 67명
- 대행업체 : 이엔워터(주)

□ 관리대행사업 성과평가

- 평가 근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성과평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 평가 결과

구 분	평가 결과 (점수)	관리대행업체	평가기관	비고
2024년	91	이엔워터(주)	한국상하수도협회	
2025년	평가중		한국상하수도협회	
2026년 1~6월	평가중		한국상하수도협회	

※ 현재 2025~2026년 상반기 성과평가 중 (서울시 물재생시설과)